

【발표논문】

#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 체제 극복 가능성과 한계

한승훈(고려대 독일어권문화연구소)

## 1 들어가며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근대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어 중 하나는 불평등조약(Unequal Treaties)이다. 세계사에서 불평등조약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에서는 19세기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이 청국과 일본, 혹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을 특징짓는 용어로 불평등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을 관철시킨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청국, 일본,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을 관철시켰다.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개항장 설정 등은 조약의 불평등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조항이었다. 그 중에서 영국은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다른 서구 열강이 청국,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균점하였다. 이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은 조약의 상호 참조 및 균점의 과정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불평등조약을 관철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이 관철되는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후대 연구자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체제가 성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sup>

지금까지 연구는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된 사실에 동의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자국사 중심으로 불평등조약을 이해하였다. 한국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출발점으로 불평등조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도 열강의 반식민지(半植民地)로 전략한 결정적 기원으로 불평등조약을 강조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1894년 영국과 조약 개정을 달성함으로써, 서구

---

<sup>1</sup> John K. Fairbank, "The Creation of the Treaty Syste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0. Late Ch'ing, 1800-1911. Part I*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李炳天, 〈開港과 不平等條約體制의 확립〉, 《경제사학》 8 (경제사학회, 1984). Peter Duus, Ramon H. Me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金基赫, 〈開港을 둘러싼 國際政治〉, 《韓國史市民講座》 7 (一潮閣, 1990); 稻生田太郎, 《東アジアにおける 不平等條約體制と近代日本》 (岩田書院, 1995).

열강과 불평등 관계를 점차 극복하고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한 측면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 이후로는 조약의 불평등성 및 외부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조선, 일본, 청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불평등조약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기도 했다.<sup>2</sup>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관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동아시아’를 하나의 조약 공간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부족하였다. 조선, 일본, 청국이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들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즉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체제’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였던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례는 동아시아 3국의 교섭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과 청국은 1871년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를 체결하면서, 서구 열강이 자신들에게 관철시킨 불평등한 조약 내용을 일부 배제하고자 했다. 조선은 일본과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개정하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 도쿄에 도착한 김홍집(金弘集)은 주일 청국공사 허루장(何如璋)으로부터 동아시아에 관철되었던 조약의 불평등성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이를 답습하지 말 것을 충고 받았다.

그렇다면 조선, 일본, 청국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공유하는 사례가 갖는 의미를 무엇일까?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3국이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조약과 그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모색되지는 않았을까?

본 발표문은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 극복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가능성이 갖는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80년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

<sup>2</sup> Dong Wang, *China's Unequal Treaties: Narrating National History*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8). Michael R. Auslin, *Negotiating with Imperialism: The Unequal Treaties and the Culture of Japanese Diplom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五百旗頭薫, 《條約改正史—法權回復への展望とナショナリズム—》 (有斐閣, 2010).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大阪大學出版會, 2016). 李穗枝, 『朝鮮の対日外交戰略 - 日清戰爭前夜 1876-1893 -』 (法政大學出版局, 2016). 박한민, 「조일통상장정 운영과 조일의 대응 - 제16관, 제18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63 (동국사학회, 2016). 박한민,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한편 미타니 히로시(三谷博)는 조약 체제가 불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였다. 영사재판권의 사례를 들면서 그는 조약의 ‘불평등’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발표자 역시 미타니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 바이나, 한국과 중국에서 이데올로기적 발현은 일본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三谷博,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條約體制—近世から近代へ」, 『東アジア近代史』 13, 2010.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전개하고자 한다.<sup>3</sup>

## 2 1880년 수신사 김홍집과 주일청국외교관 만남 :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 모색

1880년 5월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수신사로 임명하였다. 「강화도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대일무역의 무관세규정과 미곡수출이 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김홍집은 강화도조약의 개정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일본 외무성이 김홍집이 조약 교섭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협상이 지체되었던 7월 중순부터 김홍집이 수차례 방문한 곳이 있었다.<sup>4</sup> 주일 청국공사관이었다. 그 곳에서 그는 청국 공사 허루장에게 근대적인 관세 제도를 배웠다. 허루장은 관세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다. 먼저, 국가재정과 민생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둘째, 품목별로 수입 관세율을 차등 적용시킬 것, 셋째, 저율 내지는 무관세에 근거한 수출 관세율을 통해서 수출증대를 꾀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sup>5</sup> 즉 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6</sup>

김홍집은 관세자주권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단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폐단을 설명한 이는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준센(黃遵憲)이었다. 그는 협정관세에 따른 저율의 수입관세율이 무역적자의 심화와 금은의 유출에 따른 백성들의 곤궁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민란과 같은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sup>7</sup>

허루장과 황준센은 김홍집에게 조선이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관세정책과 세척 재정을 강조하였다. 그래야만 조선이 무역적자에 따른 폐단을 막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허루장은 김홍집의 귀국을 앞두고 만난 자리에서 “오직 절실히 기억하고 기억할 것”으로 타국과

<sup>3</sup> 본 발표자는 한국근대사 전공자로서, 조선과 영국의 외교관계를 주요 연구테마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일본 및 중국 측 사료에 대한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아울러 국사들의 대화의 취지에 맞게, 일본사와 중국사 전공자들이 관련 연구 시각 및 이를 보완하는 사료를 제시해 준다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1880년 초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 인식에 새로운 상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바이다.

<sup>4</sup> □修信使日記□ 卷2,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16일[□金弘集遺稿□(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26쪽, 이하 「大清欽使筆談」으로 표기, 각주의 쪽수는 □개방과 예속□을 따름]; 한편 김홍집과 허루장, 황준센의 만남 및 필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현주, 「제2차 修信使의 활동과 □朝鮮策略□의 도입」, □한국사학보□ 25(2006), 293-297쪽.

<sup>5</sup>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6쪽.

<sup>6</sup> 「大清欽使筆談」, 1880년 8월 2일, 35쪽.

<sup>7</sup>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7쪽.

제결한 조약에 관세자주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8</sup> 아직은 관세제도에 정통하지 않았던 김홍집에게 관세자주권만큼은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허루장은 김홍집에게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만을 알려주지 않았다. 조선의 향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안도 알려주었다. 첫 번째 방안은 일본의 대서구 조약 개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었다.<sup>9</sup> 일본 정부는 1880년 7월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에 조약개정안을 제출하였다.<sup>10</sup>

조약의 주요내용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서구열강에 제출한 일본측 조약개정안(1880)
세	수입 관세율	5%	약품, 광물, 곡물 외 : 5% 금속품, 의복류 외: 10% 천연기름, 종이 외: 15% 가축류, 유류, : 20% 사치품 의류 외 : 25% 담배, 주류 외 : 30%
	수출 관세율	5%	5%
칙	면세품		
	세칙 변경	협정관세	관세자주권 회복
내지 통상		금지	허가
개항장 무역		허가	허가

표 1.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내용과 1880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조약 개정안

일본정부가 제출한 조약개정안의 핵심은 수입관세율을 평균 12.5%로 인상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관세자주권의 회복에 있었다. 품목별 관세율을 차등으로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금은의 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즉 일본은 관세자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김홍집은 일본 측 교섭 대상자인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를 만난 자리에서 “귀국의 조약 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우리도 또한 마땅히 이에 준

<sup>8</sup> 같은 사료.

<sup>9</sup>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18일, 27쪽.

<sup>10</sup> 日本學術振興會 編, 口條約改正關係日本外交文書別冊 約改正經緯概要口 (日本學術振興會, 1950), 183쪽.

할 것”이라고 통지하기도 했다.<sup>11</sup>

허루장이 알려준 두 번째 비책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근래에 일본인들이 의론하여 고치려는 조약을 미국은 이미 허락”하였다는 점을 김홍집에게 부각시켰다. 이어서 그는 조선이 일본의 조약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면, 미국이 조선 측 조약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그는 「조미조약」이 체결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그 조약에 의거해서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sup>12</sup> 즉 허루장은 조선이 일본의 조약 개정을 승인해 준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되어서, 조선이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의 조약 개정을 승인해 준 요체는 무엇인가? 1878년 7월 25일 일본과 미국은 조약 개정에 관한 약서, 즉 「일미관세개정약서(日米關稅改定約書; 吉田・エヴァーツ條約)」를 체결하였다.<sup>13</sup> 그 약서의 1조에서 일미 양국은 일본의 개항장에서 5%의 수입관세율을 관철시켰던 개세약서와 일본이 자주적으로 관세 및 통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정한 1858년 「일미수호통상조약」의 효력을 중지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에 관세자주권을 비롯해서 무역에 관한 각종 규정을 일본이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sup>14</sup>

그런데 10조에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들이 제1조에 입각한 협약 내지는 조약 개정

---

<sup>11</sup>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7-28쪽;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31쪽.

<sup>12</sup>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30쪽.

<sup>13</sup> 협약의 원 제목은 “Convention Revising Certain Portion of Existing Commercial Treaties and Future Extending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다. 협약의 조문은 미국 의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b-jp-ust000009-0377.pdf>)

<sup>14</sup> “1. It is agre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at the Tariff Convention, signed at Yedo on the 25th day of June, 1866 or the 13th of the 5th month of the second year of Keio, by the respectiv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and Holland on the one hand, and Japan on the other, together with the schedules of tariff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bonded warehouse regulations, both of which are attached to the said convention, shall hereby be annulled and become inoperative a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condition expressed in Article X of this present convention; and all such provisions of the treaty of 1858, or the fifth year of Ansei signed at Yedo, as appertain to the regulations of harbors, customs and taxes, as well as the whole of the trade-regul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said treaty of 1858, or the fifth year of Ansei, shall also cease to operate.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from the time when this present convention shall take effect, the United States will recognize the exclusive power and righ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adjust the customs tariff and taxes and to establish regulations appertaining to foreign commerce in the open ports of Japan.”

제를 구축하였던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등이 조약 개정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사실상 사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서구 열강이 일본의 관세자주권 획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8년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조약 개정의 한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허루장의 인식처럼 동아시아 조약체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준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조선이 대서구 문호개방을 단행할 때, 첫 번째 국가로 미국을 선택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3 1882년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 상호 공유를 통한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기회 마련

사실 1880년 김홍집의 수신사행 이전에도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가 있었다. 1874, 5년 베이징의 영국영사 메이어스(W. F. Mayers)에게 영국의 대조선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를 건의하였던 오경석(吳慶錫)이었다. 그는 청국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조선이 ‘균형 무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무역 수지 적자로 금이 유출될 경우 국내 재정이 고갈되는 경우를 경계하였다. 나아가 그는 통상을 통해서 조선의 부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조선은 1880년 김홍집의 수신사행을 기점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통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조선이 장차 일본과 조약 개정을 할 때, 상호 불평등이 제거된 「청일통상장정(淸日通商章程)」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5</sup> 1881년 일본에 도착한 조사시찰단의 민종묵(閔種默)과 이현영(李鑣永)은 근대적인 관세제도를 비롯해서 관세자주권을 상실한 청국과 일본이 5%의 수입관세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16</sup>

조약의 주요내용		제3차 수신사 조병호가 작성한 조약 초안 (新修通商章程草案, 1881. 9)	서구열강에 제출한 일본측 조약개정안(1880)	청, 일본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
세 칙	수입 관세율	선박용 : 5% 일반상품 : 10% 사치성상품 : 25% 유 류 : 35%	약품, 광물, 곡물 외 : 5% 금속품, 의복류 외: 10% 천연기름, 종이 외: 15% 가축류, 유류, : 20%	5%

<sup>15</sup> 김홍집, 1880, 「修信使金弘集聞見事件(別單)」(송병기 역, 2000, 『개방과 연속』, 단국대학교 출판부, 75쪽).

<sup>16</sup> 한승훈, 「朝英條約(1883. 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口한국사연구口 135(2006), 225~226쪽.

			사치품 의류 외 : 25% 담배, 주류 외 : 30%	
	수출관세율	5%	5%	5%
	세칙의 변경	조선정부가 정해서 해당국에 통보한다.	관세자주권 회복	협정관세

표 2. 「신수통상장정초안」, 1880년 일본의 조약개정안, 그리고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비교

그 결과 조선은 1881년 제2차 수신사 조병호(趙秉鎬)가 일본 정부에 조선 측 개정안(「신수통상장정초안(新修通商章程草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미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하기 위해 서 텐진을 방문한 김윤식(金允植)은 이동인(李東仁)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조약 초안을 리홍장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7</sup>

「신수통상장정초안」은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5~35%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동인이 작성한 초안에서도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를 부과하고 있다. 즉 조선은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5%의 수입 관세율을 조선의 세칙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청국과 일본이 입었던 무역상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시작으로 영국(1882년 6월 6일), 독일(1882년 6월 30일)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이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은 사실상 「조미수호통상조약(이하 조미조약)」과 동일하였다. 수입관세율 규정<sup>18</sup>도 같았으며, 미국, 영국, 독일은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하였다. 1880년 허루장이 김홍집에게 낙관하였던 내용, 즉 다른 국가들도 「조미조약」에 의거해서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었다. 즉 조선은 「조미조약」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이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으로부터 강요당한 조약의 불평등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조미조약」을 중재하였던 청국에게도 기회였다. 리홍장(李鴻章)은 텐진에서 미국 전권대사 슈펠

<sup>17</sup> 현재 이동인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초안의 전문은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1880년 11월에 이동인이 제시했던 초안을 보고 이를 요약한 주일 영국 대리 공사 케네디(Kennedy)의 보고서와 1882년 2월(음력 1881년 12월)에 이동인 초안을 보고 리홍장(李鴻章)이 평가한 기록을 김윤식(金允植)이 남긴 『陰晴史』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Kennedy to Granville, Tôkiô, November 21, 1880(Received January 3, 1881), Very Confidential. No.179, FO 46/258; 宋炳基, 「金允植 李鴻章의 保定 天津會談(上): 조미조약 체결(1882)을 위한 초청교섭」, 『東方學志』 44(1984), 184~185쪽.

<sup>18</sup> 일상용품의 수입관세율을 10% 이하, 사치품(담배, 술 등)의 수입관세율을 30% 이하로 규정.

트(R. W. Shufeldt)와 「조미조약」 체결을 위한 중재를 진행하였다. 그 때 리홍장은 조선의 관세자주권과 10, 30%의 수입관세율 등을 조약 초안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에 불평등한 내용을 조약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그 의도와 관련해서는 1880년 말 허루장이 리홍장에게 보낸 「再上李伯相論朝鮮通商書」가 주목을 요한다.<sup>19</sup> 그 서신에서 허루장은 청국이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 체결을 중재하였을 때, 5가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썼다. 그 중 4번째는 영사재판권을 멸살(滅殺)하는 것이었으며, 5번째는 청국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청국은 자국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조미조약」 체결을 중재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에 불평등한 내용을 배제했던 것이다.

#### 4 맺음말을 대신해서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에서는 불평등조약체제의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조미조약」은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배제 혹은 개정하려는 조선, 청국, 일본의 희망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시행중인 조약의 내용을 집약해서 반영한 「제2차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이하 제2차 조영조약)」을 조선에 관철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자리해 있었다. 임오군란으로 촉발된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갈등의 고조,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 강화에 따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관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한 「조일통상장정(1883)」 체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뿐만 아니었다. 미국은 조약 비준 이전부터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조미조약」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제2차 조영조약」의 균점으로 뜻한 바를 이루었다.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하고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10%에서 7.5%로 낮춘 영국 전권대사 파크스(H. S. Parkes)의 조약안을 승인하였다. 그 이유는 청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즉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극복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 갔던 것이다.

그렇기에 1880년대 초반 잠깐 등장하였다가 기억에서 사라진 일들을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들은 부족하지만 다른 발표자 및 참가자들이 함께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sup>19</sup> 송병기, 「(駐日清國公使 何如璋 의 「主持朝鮮外交議」 에 대하여), □동양학□ 11, 1981, 228쪽.

첫 번째는 동아시아 3국의 경쟁과 갈등의 근현대사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 특히 상생의 공존과 공영의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 내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를 통해서 상호 공감과 소통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갈등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3국의 서양인식을 밝히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불평등조약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라는 관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한다면, ‘불평등조약’이 갖는 서양의 ‘침략적 구도’ 속에 감춰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 사례가 있을까? 아니 사례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